|  |  |  |
| --- | --- | --- |
| **국토자원 행정재심의결정 이행 및** **감독 규정**국토자원부 령 제54호《국토자원 행정재심의결정 이행과 및 감독 규정》이 2012년 8월 16일 국토자원부 제2차 사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반포하며,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장 徐紹史2012년 9월 6일**제1조** 행정재심의 결정 이행에 대한 감독을 보강하여 행정재심의 결정의 전면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심의법》,《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심의법 실시조례》,《국토자원 행정재심의규정》등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제2조** 이 규정에서 행정재심의 결정이라 함은 국토자원 행정재심의기관(이하 행정재심의기관이라 함)에서 법에 따라 피 신청인이 행한 구체적 행정행위를 심사하고 내린 행위유지, 이행명령, 취하, 변경, 불법 확인결정을 말한다. **제3조** 행정재심의기관이 내린 행정재심의결정에 대한 피 신청인의 이행 및 피 신청인의 행정재심의결정 이행상황에 대한 행정재심의기관의 감독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행정재심의기관이 행정재심의안건 심리과정에 내린 피 신청인의 구체적 행정행위 중지 또는 관련 행정 심사인가 일시중지 결정 이행상황은 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법적 효력을 발생한 행정재심의 조정서에 대한 피 신청인의 이행 및 피 신청인의 행정재심의 조정서 이행상황에 대한 감독은 이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4조** 행정재심의기관은 당해 기관에서 내린 행정재심의결정 이행상황에 대한 감독을 책임진다. 행정재심의기구는 감독사항 처리과정에 아래의 직책을 수행해야 한다. (1) 행정재심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과 원인을 조사, 확인하고 행정재심의기구에 처리의견을 제출한다. (2) 행정재심의결정의 이행중지여부를 심사하고 행정재심의기관에 처리의견을 제출한다. (3) 행정재심의기관에 이 규정을 위반한 피 신청인의 행위에 대한 처리의견을 제출하고 인사부서와 감찰부서에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분건의를 제출한다. **제5조** 피 신청인은 행정재심의결정서를 입수한 후 법정기한 내에 재심의 결정을 완전 이행해야 한다. 법정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의 기한 내에 완전 이행해야 한다. (1) 행정재심의결정에서 이행기한을 명확히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행정재심의결정에서 이행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재심의결정서 입수일로부터 60일 내에 완성해야 한다. 불가항력이나 신청인 또는 제3자의 원인으로 상기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제6조** 피 신청인은 행정재심의결정 이행을 필하였거나 이행기한 만료 20일 근무일 내에 행정재심의기관에 행정재심의결정 이행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7조** 행정재심의결정 이행기한이 만료되어도 피 신청인이 행정재심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행정재심의기관에 이행을 명령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제8조** 행정재심의기관은 이행명령 신청서 입수일로부터 5일 근무일내에 피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서를 발송하여 피 신청인이 10일 근무일내에 행정재심의결정 이행여부에 대해 답변을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피 신청인이 이행할 조건이 안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증거와 의거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 피 신청인이 행정재심의결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이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서면통지서 입수일로부터 20일 근무일내에 이행을 필하고 행정재심의기관에 서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제10조** 행정재심의기관은 피 신청인이 이행할 조건이 안 된다고 인정하여 제출한 증거와 의거를 심사하고 이 규정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상황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심의결정 이행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행정재심의기관에서 심사하여 행정재심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피 신청인의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재심의기관에서 법에 따라 피 신청인에게《행정재심의결정 이행명령 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행정재심의결정 이행명령 통지서》에는 이행명령 대상의 기관명칭, 행정재심의결정 송달일자, 이행내용, 이행기한 및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 등의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제11조** 피 신청인이 신청인과 이행중지 합의를 보고 행정재심의기관에 이행중지신청을 제출한 경우 행정재심의기관은 이를 인가하는 동시에 행정재심의결정 이행중지를 결정해야 한다.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재심의기관에서 직접 행정재심의결정 이행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1) 새로운 사실과 근거가 행정재심의결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2) 행정재심의결정을 이행하려면 여타안건의 심리결과가 필요하나 여타안건이 판결나지 않았을 경우(3) 불가항력 등 이행을 중지해야 할 기타 상황.이행 중지기간은 제5조에서 규정한 기한에 계상하지 않는다. 이행을 중지한 사정이 멸실된 경우 행정재심의기관은 피 신청인에게 즉시 행정재심의결정 이행회복을 통지해야 한다.**제12조** 행정재심의결정의 집행중지나 이행회복을 결정한 경우 행정재심의기관은《행정재심의결정 이행중지 결정서》나《행정재심의결정 이행회복 결정서》를 발급하여 이행중지나 이행회복 이유, 법적 의거를 명기하고 행정재심의 신청인과 피 신청인, 제3자에게 송달해야 한다.**제13조** 피 신청인이 규정기한 내에 행정재심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재심의기관은 서면검사를 명하거나 통보비판하거나 당해 연도와 차기연도 제반 우수평가에 참여할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줄 수 있으며, 행정재심의기구는 인사, 감찰 부서에 직접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징계, 과실기록, 중대 과실기록 등 행정처벌을 가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상기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행정재심의기구는 인사, 감찰 부서에 직접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강등, 철직 또는 제명 행정처분을 가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제14조**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国土资源行政复议决定履行与****监督规定**国土资源部令第54号 　　《国土资源行政复议决定履行与监督规定》已经2012年8月16日国土资源部第2次部务会议通过，现予以发布，自2012年10月1日起施行。部 长 徐绍史 2012年9月6日 　　　**第一条** 为了加强对行政复议决定履行工作的监督，保证行政复议决定的全面履行，根据《中华人民共和国行政复议法》、《中华人民共和国行政复议法实施条例》和《国土资源行政复议规定》等有关规定，制定本规定。 　　**第二条** 本规定所称的行政复议决定，是指国土资源行政复议机关（以下简称行政复议机关）依法对被申请人作出的相关具体行政行为进行审查后，作出的维持、责令履行、撤销、变更、确认违法的决定。 　　**第三条** 被申请人履行行政复议机关作出的行政复议决定，以及行政复议机关对被申请人履行行政复议决定情况的监督，适用本规定。 　　行政复议机关在行政复议案件审理过程中作出关于对被申请人停止执行具体行政行为或者暂停相关行政审批事项决定的履行情况，按照本规定执行。 　　被申请人对发生法律效力的行政复议调解书的履行，以及对被申请人履行行政复议调解书情况的监督，参照本规定执行。 　　**第四条** 行政复议机关对本机关作出的行政复议决定履行情况负责监督。行政复议机构具体办理监督事项，履行下列职责： 　　（一）对不履行行政复议决定的事实、原因进行调查或者核实并向行政复议机关提出处理意见； （二）对是否中止履行行政复议决定进行审查并向行政复议机关提出处理意见；　　（三）)对被申请人违反本规定的行为，向行政复议机关提出处理意见，以及关于向人事、监察部门提出对有关责任人员的处分建议。 　　**第五条** 被申请人收到行政复议决定书后，应当在法定期限内全面履行；未规定法定期限的，在下列期限内全面履行： 　　（一）行政复议决定对履行期限作出明确规定的，依其规定；　　（二）行政复议决定对履行期限未作出明确规定的，自接到行政复议决定书之日起60日内完成。 　　因不可抗力或者申请人、第三人的原因无法在上述期限内履行的除外。 　　**第六条** 被申请人应当在行政复议决定履行完毕或者履行期限届满后20个工作日内向行政复议机关书面报告行政复议决定的履行结果。 　　**第七条** 行政复议决定履行期满，被申请人不履行行政复议决定的，申请人可以向行政复议机关提出责令履行申请。 　　**第八条** 行政复议机关应当自收到责令履行申请书之日起5个工作日内书面通知被申请人，要求被申请人自收到通知之日起10个工作日内就是否履行行政复议决定作出书面答复。被申请人认为没有条件履行的，应当说明理由并提供相关证据、依据。 　　**第九条** 被申请人没有履行行政复议决定但决定履行的，应当自收到书面通知之日起20个工作日内履行完毕，并书面报告行政复议机关。 　　**第十条** 行政复议机关对被申请人认为没有条件履行所提出的书面答复及有关证据、依据进行审查，属于本规定第十一条第二款规定情形之一的，行政复议机关可以决定中止履行行政复议决定。 　　经行政复议机关审查，认定被申请人不履行行政复议决定的理由不成立的，行政复议机关依法作出《责令履行行政复议决定通知书》并送达被申请人。 　　《责令履行行政复议决定通知书》应当载明被责令履行的机关名称、行政复议决定送达日期、履行内容、履行期限及不履行所应当承担的法律责任等内容。 　**第十一条** 被申请人与申请人达成中止履行协议的，向行政复议机关提出中止履行申请，经行政复议机关审批并决定中止履行行政复议决定。 　　有下列情形之一的，行政复议机关可以直接决定中止履行行政复议决定： 　　（一）有新的事实和证据，足以影响行政复议决定履行的； 　　（二）行政复议决定履行需要以其他案件的审理结果为依据，而其他案件尚未审结的； 　　（三）因不可抗力等其他需要中止履行的情形。 　　中止履行期间，不计算在第五条规定的期限内。中止履行的情形消失后，行政复议机关应当及时通知被申请人恢复履行行政复议决定。 　　**第十二条** 决定中止、恢复履行行政复议决定的，行政复议机关应当制发《行政复议决定中止履行通知书》、《行政复议决定恢复履行通知书》，载明中止、恢复履行的理由、法律依据，并送达行政复议申请人、被申请人、第三人。 　　**第十三条** 被申请人在规定期限内不履行行政复议决定的，行政复议机关可以作出责令书面检查、通报批评、取消当年和下一年度各项评优资格的处理决定，行政复议机构可以向人事、监察部门建议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记过、记大过的行政处分。 　　经责令履行仍拒不履行的，行政复议机构可以建议人事、监察部门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降级、撤职、开除的行政处分。 　　**第十四条** 本规定自2012年10月1日起施行。 |